

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유생들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할 여지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이 일을 문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는 더 확산되지 않았다.⁴⁹⁾ 정조는 진하특사 일행이 “불상을 받들고” 귀국한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 같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서 황제의 ‘금불’ 선물 사실과 박명원이 그 ‘금불’을 받은 경위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언제였을까?

오류가 분명한 실록의 9월 17일 조 기사를 배제하면, 사료상 ‘금불’의 처리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승정원일기』의 10월 23일 조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면, 국왕이 “황제가 보낸 금불은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는가?”라고 묻자, 정민시(鄭民始)는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 역관 한 사람을 정해서 “영변(寧邊) 향산(香山)의 정결한 장소”로 보내자는 것이 조정의 공론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국왕은 사신 일행에게 서둘러 통지하여 “절대로 그것[금불: 인용자]이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⁵⁰⁾ 이로부터 나흘 뒤인 10월 27일에 복명한 박명원은, “황제가 보낸 금불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라는 국왕의 질문에, “피국(彼國)에서는 남의 장수를 기원할 때 반드시 금불을 서로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번 금불의 출송(出送) 역시 전하를 위하여 축수(祝壽)하려는 본의(가 있으나) 신이 도중에 이미 영변 향산에 안치하라는 연교(筵敎)를 엎드려 받들었기에 역관 한 명으로 하여금 향산의 정결한 사찰에 송치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⁵¹⁾ 이로부터 박명원이 서울로 오는 도중 10월 23일 국왕이 내린 지시에 따라 불상을 묘향산으로 송치했음을 알 수 있다.

49) 3년 뒤인 건륭 48년(1783) 6월 하순 박명원은 ‘동지겸사은행’의 정사로 임명되었다 (『承政院日記』 정조 7년 6월 24일 조). 박명원은 3년 전의 과오와 질병을 이유로 사임을 요청하였는데, 정조는 이번에도 지난 일을 “추제(追提)”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承政院日記』 정조 7년 7월 2일 조). 그러나 결국에는 질병을 이유로 박명원을 면직하고 황인점을 정사로 임명하였다 (『朝鮮王朝實錄』 정조 7년 7월 5일 조).

50)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23일 조.

51)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27일 조.

조선 조정에서는 ‘금불’의 처리 방침을 정한 10월 23일 이전에 “황제가 보낸 금불”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황제가 국왕에 대한 특별 선물로 ‘금불’을 보냈다면 청은 조선에 보낸 문서에 그 사실을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다.⁵²⁾ 그러나 조선의 진하특사를 맞이하여 건륭제가 국왕에게 선사한 것은 “가상”(加賞)으로 준 “단(綬) 18필”과 “조례상사”(照例賞賜)로 준 말 1필을 비롯한 여러 물품이 있었을 뿐,⁵³⁾ ‘금불’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때까지 서울에 도착한 「9.17 장계」나 선래군관의 보고에도 “황제가 보낸 금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오직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에 첨부된 「원주」에 판첸이 선물한 “동불”(銅佛)의 존재만 보일 뿐이다.⁵⁴⁾ 그렇다면 “황제가 보낸 금불”이란 혹 판첸이 선물한 ‘동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52) 혹 건륭제가 ‘금불’을 보내고도 조선이 ‘배불의 나라’임을 고려하여 문서에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청의 황제가 건륭 49년(1784)과 가경 17년(1812) 조선에 불상[“장수불(長壽佛)"]을 선물할 때 예부가 조선에 보낸 자문에 불상이 황제의 “가상(加賞)”임을 명시하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건륭 49년의 경우는 건륭제가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책봉하면서 보낸 것이었고(『禮部知會遣官冊封時賜物咨』(건륭 49년 10월 13일), 『同文彙考』原編 권37, pp. 43b-44a), 가경 17년의 경우는 가경제가 효명세자(孝明世子)를 책봉하면서 보낸 것이었다(『禮部知會世子加賞賜物咨』(가경 17년 10월 일), 『同文彙考』原編續 錫賚三, pp. 1a-1b). 이들 불상 역시 조선에게는 결코 달가운 선물이 아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청의 칙사가 가져왔기 때문에 불상의 서울 ‘입성’을 막기란 불가능했다. 정조는 문효세자에게 보낸 불상을 북한산 승가사(僧伽寺)에 안치시켰다(『承政院日記』 정조 8년 12월 24일 조). 효명세자에게 보낸 불상의 경우는, 서울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유정양(柳鼎養)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순조가 영접도감에서 일단 불상을 접수하라고 지시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朝鮮王朝實錄』 순조 12년 12월 2일 조; 『承政院日記』 순조 12년 12월 2일 조; 『承政院日記』 순조 12년 12월 4일 조).

53) 『禮部知會使臣謝摺知道及抄錄賞單咨』, 『同文彙考』原編 권15, pp. 15a-15b; 『禮部知會賜物及頒賞使臣咨』, 『同文彙考』原編 권15, pp. 15b-16b.

54) 『原奏』, 『同文彙考』原編 권15, p. 14b.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황제가 주었다는 ‘금불’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불상은 진하특사 일행이 판첸으로부터 받은 ‘동불’뿐이다.

판첸이 박명원에게 준 것은 ‘동불’이지 ‘금불’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금불’이라는 말은 불상의 내부 재질이 황금일 때에만 쓰는 말이 아니다. 내부 재질이 다른 것이라도 황금으로 도금했다면 ‘금불’로 부를 수도 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피서록」(避暑錄)에서 판첸이 준 불상을 “나무를 깎아 도금”한 것으로 묘사한 바 있다.⁵⁵⁾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말은 「행재잡록」 등에서 “동불”이라고 쓴 것과 모순되지만,⁵⁶⁾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불상의 “도금” 사실이다. 실제로 박지원은 「찰십륜포」에서 판첸이 준 불상을 가리켜 “소금상”(小金像)이라고 하였다.⁵⁷⁾ 여기에 더하여 ‘금불’이 실은 판첸이 준 불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료가 또 존재한다. 10월 28일 출발한 사은행의 서장관 윤장렬이 이듬해 귀국하여 제출한 문건사건을 보면, 건륭제가 박명원 일행에게 판첸을 만나게 했던 이유(후술)를 말한 다음, “그 (판첸을) 가서 만나는 날에 이르러, (판첸이) 금불을 주었던 것은 곧 불가의 계법(戒法)의 뜻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⁵⁸⁾ ‘금불’이란 곧 판첸이 박명원에게 준 불상이었던 것이다.⁵⁹⁾

55) 『熱河日記』『避暑錄』, p. 276.

56) 『熱河日記』『行在雜錄』, pp. 189-190.

57) 『熱河日記』『札什倫布』, p. 185.

58) 『承政院日記』 정조 5년 3월 2일 조.

59) 8월 11일 판첸은 정사·부사·서장관 모두에게 불상을 주었다(『原奏』, 『同文彙考』原編 권15, p. 14b). 따라서 문제가 된 불상의 수량은 3개여야 할 터인데, 『조선왕조실록』은 “금불 하나[金佛一軀]”로 적어 수량이 1개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9월 17일 조). 수량 문제는 姜東局이 “황제가 보낸 금불”이 따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姜東局(2012), 앞의 논문, pp. 273-275). 그러나 『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9월 17일 조의 해당 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미 서술하였듯이 정조가 불상을 묘향산에 보내도록 한 것은 10월 23일이었다. 이 기사는 실록 편찬자가 『9.17장계』를 잘못된 날짜에 실으면서 박명원의 사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불상의 처리 결과까지 대략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상의 수량을 임의로 기입했을 가능성성이 짙어 보인다.

‘금불’이 판첸이 준 불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초록원주자문」에서 분명 판첸이 사신에게 주었다고 한 불상을 조선 조정에서 황제가 국왕에게 보낸 불상이라고 여긴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9.17 장계」에서 박명원은 불상은 물론이거니와 판첸과의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장계나 선래군관의 보고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박명원 일행과 판첸의 만남 및 문제의 불상에 관한 조선 조정의 사실 인식은 오직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예부 자문에는 박명원 일행에 대한 ‘봉불지사’ 혐의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다(후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금불’을 황제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여 묘향산에 안치시키는 한편, 진하특사 일행을 상대로 제기된 ‘봉불지사’ 혐의를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판첸과의 만남 및 불상 수수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박명원이 올린 “별단”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9.17 장계」에서 박명원은 선래군관의 귀국 편에 장계를 보내면서 “별단” 1건도 함께 올린다고 하였다. 유감스럽게도 현존 사료에는 이 “별단”的 원문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1월 12일 박명원이 올린 상소를 통해서 “별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추정할 수는 있다. 즉, 박명원은 “불동자”(佛童子)를 받아 온 일을 가리켜, “그때의 사실은 모두 이미 별단 서계(書啓)에 앙달(仰達)하였으니, 지금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하여 (전하의 귀를) 번거롭게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비록 식견이 없더라도 이단(異端)은 반드시 배척해야 함은 대략 알고 있으니, 그 어찌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받아 올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놀라고 의심하면서 쟁난(爭難)하던 때를 당하여 저들이 황명에서 나왔다고 하니 어찌 감히 황지(皇旨)를 거슬러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부가 불자(佛子) 등 종류를 문서에 기입하여 복주(覆奏)

한 목록[『판챈급여사신주접』을 지칭: 인용자]을 보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이 과연 황지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불상 문제를 두고 청 측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자칫 국왕에 누를 끼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⁶⁰⁾

박명원의 상소는 “황제가 보낸 금불”이란 곧 판챈이 준 불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다. 이 상소 내용과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의 내용을 결합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박명원은 “황지”를 칭하면서 판챈을 만나라는 청 측의 요구를 어길 수 없어 판챈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불동자”를 받았다. 둘째, 박명원은 일행이 판챈을 만났고 그로부터 “불동자”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부가 황제에게 보고하였음을 문서로 확인하였다. 이 문서는 『초록원주자문』에 첨부된 『원주』의 『판챈급여사신주접』을 가리키며, 이를 본 박명원은 모든 것이 정말 “황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불동자”는 판챈에게서 받은 것이었지만, 박명원은 결국 황제가 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것이다. 셋째, 박명원은 “불동자”를 포함하여 판챈과의 만남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장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별단”에만 기록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아마도 사안의 염중성을 의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9.17 장계』는 10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때 국왕은 “별단”을 통해서 판챈과의 만남 및 “불동자”가 모두 “황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박명원의 ‘해석’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10월 23일은 물론 10월 27일 박명원을 소견할 때에도 “황제가 보낸 금불”이라 했던 것이다. 그리고 10월 27일 박명원은 황제가 “전하를 위하여 축수하려는” 뜻에서 ‘금불’을 보낸 것이라는 자신의 ‘해석’을 되풀이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사은행을 마치고 돌아온 윤장렬은 판챈이 준 ‘금불’에

60)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12일 조.

“불가의 계법”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박명원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었다. ‘금불’ 수여의 주체는 황제, 그 의미는 “축수”였다는 것이 박명원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윤장렬은 수여의 주체를 판첸, 그 의미를 “계법”으로 보았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자는 분명 ‘오해’요 ‘오판’이 된다. ‘금불’에 대한 두 사람의 상이한 이해는 판첸과의 만남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갈린 것으로 보인다.

박명원이 이끄는 진하특사의 행선지는 원래 북경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곧바로 열하로 보내지 않은 예부 관원들에게 황제가 진노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갑작스레 열하로 향했다.⁶¹⁾ 그리고는 “황지”에 따라 판첸을 만났다. 이 만남이 진짜 “황지”에 의한 것인지는 의심스러웠으나, 예부가 보여준 문서[『판첸급여사신주접』]를 통해서 정말 그런 “황지”가 있었음을 알았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아무도 판чен을 만나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던 터라 박명원으로서는 모든 것을 황제의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건륭제가 진하특사 일행을 판첸과 만나게 한 이유는 국왕을 포함한 조선 조정에게도 분명 수수께끼였을 것이다. 따라서 박명원 일행의 귀국 직후 북경으로 떠난 사은사 일행이 그 이유를 탐문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장관 윤장렬은 문건사건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하였다. “작년 가을 황제가 열하에 있을 때 번승(蕃僧)[판첸: 인용자]과 이야기하다

61) 건륭 45년 조선의 진하특사 파견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특사 파견을 결정한 것은 3월 20일이었지만, 청의 변경 관원들은 아마도 특사의 도강 시점[6월 24일]을 전후해서야 이를 인지하여 북경에 보고했을 것이다. 특사의 도강 시점에 이미 열하에 머물고 있던 건륭제가 조선의 특사 파견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은 알 수 없다. 다만 건륭제가 조선의 특사가 북경에 도착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리 지시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경의 예부 관원들은 특사 일행의 망하례(望賀禮)만 준비하였을 뿐 도착 즉시 열하로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9.17 장계」에 따르면, 건륭제는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예부 관원들에게 1년의 벌봉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가 (이야기가) 외국의 일에 미쳤습니다. (그때) 황제는 조선이 예의를 두 터이 송상하고 인물과 의관(衣冠) 또한 볼 만하다고 성칭(盛稱)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하 사행이 마침 그때에 연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신으로 하여금 나아가 (판첸을) 만나게 한 것은 대개 번승에게 과시(誇示)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⁶²⁾ 그리고 윤장렬의 이러한 해석은 그의 독단이 아니었다. 건륭 46년 3월 2일 정조는 윤장렬을 소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황제가 작년에 사신을 불러 판чен을 만나게 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물을 (판첸에게) 과장(誇張)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러한가?” 윤장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사람들[彼人]의 전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⁶³⁾

윤장렬은 건륭 45년 8월의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건륭제가 진하특사 일행을 판чен과 만나게 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판чен의 불상 선물이 황제와 무관한 “계법”的 의미였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도 윤장렬의 보고가 진실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⁶⁴⁾ 그러나 건륭 45년 8월 박명원 일행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그들로서는 황당하고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한 까닭에 ‘오해’와 ‘오판’의 함정에 빠졌고, 급기야 ‘봉불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

62) 『承政院日記』 정조 5년 3월 2일 조.

63) 『日省錄』 정조 5년 3월 2일 조.

64)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륭제가 조선에 대하여 티베트 불교와의 “연결 가능성”을 탐진”하였고, 판чен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티베트와 무관했던 제국의 또 다른 영역”을 소개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가 있다(차혜원(2010), 앞의 논문, 343-344쪽). 그러나 이는 윤장렬의 보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윤장렬의 보고를 고려할 때 후자는 몰라도 전자는 근거가 박약해 보인다. 게다가 건륭제가 정말 조선에 대하여 티베트 불교와의 “연결 가능성을 탐진”하고자 했다면 9월 1일 판чен의 북경 도착(石濱由美子(1994), 앞의 논문, p. 36) 이후에도 박명원 일행의 판чен 접견을 재차 시도하지 않았을까?

르렀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상을 해 보자. 만약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건륭 45년 박명원의 사행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박명원은 「9.17 장계」에서 황제의 특별한 우대 조치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 박명원은 판첸이 준 불상을 황제가 준 것이라고 ‘오편’하여 ‘배불의 나라’ 조선에 ‘모시고’ 왔다. 그래서 ‘봉불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판첸을 만나고 불상을 받은 경위를 해명한 “별단”을 국왕에게 제출했지만, 민감한 내용 탓인지 몰라도 그 “별단”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동문휘고』에 수록된 예부의 자문에는 ‘봉불지사’의 협의를 확인해 주는 내용까지 있다(뒤에서 상술). 결국 박명원은 건륭제의 우대에 도취한 ‘봉불지사’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의 관료 사대부에게 ‘봉불지사’는 최악의 오명이었을 터이니, 정면으로 반박은 못할지언정 부득이했던 사정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박명원과 정원사는 11월 12일의 상소에서 부득이하게 불상을 받아온 경위를 밝혔으나, 상소의 내용은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는 ‘봉불지사’ 협의를 벗기기에 부족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박명원에게는 박지원이 있었다. 박명원이 『열하일기』를 읽었다면, 아마도 박지원을 자제군관으로 삼아 사행에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열하행을 그에게 강력히 권유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⁶⁵⁾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판첸과의 만남 및 불상에 관한 일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으로서도 종형(從兄) 박명원에 대한 ‘봉불지사’ 협의는 그냥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비록 자제군관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신도 필경은 진하 특사 일행에 속하였으므로 ‘봉불지사’라는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

65) 진하특사 일행의 열하행이 결정되었을 때 박명원은 주저하는 박지원에게 동행을 강력히 권유하였다(『熱河日記』『漠北行程錄』, p. 114).

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어떻게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론을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5. 『열하일기』의 ‘봉불지사’ 변호론

5.1. 청 예부의 문서 변조 고발

『열하일기』의 「행재잡록」에는 조선 사신의 열하 여행 및 활동과 관련해서 청 예부의 관원들이 작성한 문서 10건이 실려 있다.⁶⁶⁾ 이 가운데 예부가 조선 사신의 판첸 접견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와, 역시 예부가 황제의 “가상”에 감사하는 박명원의 정문을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에는 ‘봉불지사’ 문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이 보인다. 전자는 <표 2>의 「초록원주자문」에 첨부된 「원주」의 상주 3건 중 「판첸급여사신주

66) 『熱河日記』『行在雜錄』, pp. 188-191. 이들 문서 10건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8월 4일 저녁 예부가 회동사역관 대사(大使) 장문금(張文錦)에게 조선 사신을 열하로 데려오라는 황제의 유지를 전하는 문서; ② 8월 4일 예부가 장문금에게 열하로 갈 조선 사신 일행의 명단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문서; ③ 열하로 갈 조선 사신 일행의 명단[아마도 8월 4일 장문금이 예부에 제출]; ④ 8월 9일 예부의 만·한 상서가 조선 사신의 열하 도착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⑤ 8월 10일 예부의 만·한 상서가 조선 사신이 2품·3품 대신의 반열에 들어가 행례 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감사하는 정문을 올렸다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⑥ 8월 12일 예부가 8월 11일에 조선 사신이 판첸을 만난 사실과 판첸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⑦ 예부가 조선에 보낼 문서를 병부로 송달하는 문서; ⑧ 예부가 만수절 당일의 조하 의례 절차를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⑨ 예부의 주객청리사가 황제가 앞으로 조선에서 사온 표문을 올릴 때에는 방물을 준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유지를 8월 12일 내각에 하달했다는 내용의 자문을 행재 예부로부터 받았음을 예부 당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 ⑩ 8월 14일 예부의 만·한 상서가 조선 사신이 국왕 및 사신 일행에 대한 황제의 “가상”에 감사하는 정문을 올렸다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첩』에, 후자는 「사신사접자문」에 각각 해당한다. 제2장의 말미에서 「초록원주자문」과 「사신사접자문」이 예부의 상례를 벗어난 발송이라는 문제 외에 진하특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제 그 까닭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서술의 편의상 먼저 「사신사접자문」을 보자. 「9.17 장계」에 따르면, 열하에서 예부는 박명원에게 8월 9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은 정문의 제출을 요구하였다[<표 3> 참조]. 박명원은 두 차례 모두 “사사”(私謝)의 불가를 주장하였는데, 특히 8월 13일의 경우는 국왕에 대한 “별예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는 더욱 불가하다고 하면서 예부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예부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별상(別賞)을 삼가 받았다는 뜻”만 적어 정문으로 제출하였다. 『열하일기』의 「행재잡록」에 따르면, “황은”에 감사한다면서 예부에 제출한 정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가) 伏以恭遇皇上萬壽節屆, 九域慶溢, 本國不勝歡忭之祝, 略效進賀之忱. [禮部添, ‘瞻望聖僧, 獲沾福佑.’] 乃者格外恩賞, 特沾小邦, 至及於陪臣之賤. [禮部改, ‘加賞國王陪臣并從人等緞匹銀兩.’] 榮光所被, 曠絕前後. 謹當歸奏國王, [禮部添, ‘另行具表陳謝.’] 感戴皇恩, 呈請禮部大人, 代爲轉奏([]) 부분은 박지원의 주석; 밑줄은 인용자).⁶⁷⁾

그런데 『동문휘고』에 수록된 「사신사접자문」을 보면, 박명원의 정문은 다음과 같았다.

(나) 伏以國王恭遇皇上七旬萬壽大慶, 不勝歡忭, 使朴明源等, 賚表虔賀. 當蒙特恩, 令陪臣等, 附於天朝二三品大臣之末, 隨班行禮. 已屬榮幸, 又奉恩旨, 令陪臣等, 拜見班禪額爾德呢, 瞻仰聖僧, 得沾福祐.

67) 『熱河日記』『行在雜錄』, p. 191.

復蒙隆恩，得以隨附天朝大臣之班聽戲。皆小國陪臣等，素所未逢未見之曠典。茲蒙皇上格外天恩，**加賞國王並陪臣等綬匹，以及從人等銀兩**。陪臣跪領之下，感戴難名。**謹當回邦啓知國王，另行具表，敬謹叩謝天恩**外，所有朴明源等感激憇忱，伏乞代爲轉奏(밑줄은 인용자).⁶⁸⁾

(가)의 정문 내용은 「9.17 장계」의 보고와 부합하는 것으로, “격외은상”(格外恩賞)이 미친한 배신(陪臣)인 자신에게까지 미쳤음을 감사하며 국왕에게 사실을 보고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분량도 (가)에 비해 훨씬 많을뿐더러 몇몇 군데 중요한 수정 및 침가가 있다. 박지원에 따르면, 예부 필첩식(筆帖式)[‘서기’라는 뜻의 만주어 ‘bithesi’의 음역]의 문부(文簿)를 통해 상주 내용이 원본과 크게 달라졌음을 발견하고 크게 놀란 박명원은 역관을 보내어 예부에 항의했으나, 원본에 “사실” 언급이 전혀 없어 조선을 위해 “주선”(周旋)해 준 것인데 고마운 줄 모르고 도리어 화를 내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한다.⁶⁹⁾ (가)의 정문 원본이 추상적 서술임에 비해 (나)의 서술이 “황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예부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박명원의 입장에서 예부의 무단 “첨개”(添改)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박지원이 (가)에서 예부가 무엇을 더하고 고쳤는지 밝힌 것도 두 가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은상이) 특별히 소방(小邦)을 적시고 미친한 배신(陪臣)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特沾小邦，至及於陪臣之賤]를 “국왕과 배신 등에게 단필(綬匹)을, 그리고 종인 등에게 은량(銀兩)을 추가로 상사(賞賜)하셨습니다”[加賞國王並陪臣等綬匹，以及從人等銀兩]로 고치고, “삼가 마땅히 돌

68) 「禮部知會使臣謝摺知道及抄錄賞單咨」, 『同文彙考』原編 권15, pp. 15a-15b.

69) 『熱河日記』「行在雜錄」, p. 191. 서장관 조정진은 박명원의 정문을 예부가 “임의로 개찬[任自改撰]”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근래 감정 기복이 심한[“喜怒暴發”] 황제에 대하여 신하들이 “영합(迎合)과 미봉(彌縫)”을 일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5일 조).

아가 국왕에게 아뢰겠습니다”[謹當歸奏國王]에 몇 구절을 첨가하여 “삼가 마땅히 나라로 돌아가 국왕에게 아뢰어 알려 (국왕이) 따로 표문을 갖추어 천자의 은혜에 공경하고 삼가며 고사(叩謝)하도록 하겠습니다”[謹當回邦啓知國王, 另行具表, 敬謹叩謝天恩]로 수정한 것은 조선 조정에 외교적 부담을 줄 수 있었다. 본래 박명원은 “격외은상”이 미친한 “배신”, 즉 자신에게까지 미쳤다고 말하고, 귀국 후 이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겠다고만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예부는 “가상”의 대상에 “국왕”을 추가하고 국왕이 별도로 표문을 갖추어 사은할 것이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조선 조정이 9월 20일경 사은사 파견을 결정하였던 것도 이 같은 수정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예부가 추가한 “성승(聖僧)을 침양(瞻仰)하여 복우(福祐)를 더할 수 있었다”[瞻望聖僧, 得沾福佑]는 귀국 후 박명원 일행에게 가해진 ‘봉불지사’ 혐의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나)에 보이는 판첸 “배견”(拜見)은 『9.17 장계』에서 판첸과의 만남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박명원의 입장에서 그 자체로 걸끄러운 일이었다. 하물며 예부가 “성승을 침양하여 복우를 더할 수 있었다.”고 쓴 것은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이것이 만약 박명원의 봇에서 나온 것이라면, 박명원은 꼼짝없이 ‘봉불지사’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박지원이 이 구절을 두고 예부가 멋대로 첨가한 것임을 특기(特記)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5.2. 「찰십룬포」(札什倫布)의 내용 및 구성과 ‘봉불지사’ 변호론

이번에는 예부가 조선 사신의 판첸 접견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한 『판첸급여사신주접』을 보자. 8월 13일 작성한 정문의 문제는 예부가 원문을 멋대로 고친 탓으로 돌림으로써 일단 해명이 되었다고 하자. 또 “성승을 침양하여 복우를 더할 수 있었다.” 운운한 것은 8월 11일 판첸과의 만남

을 회고한 것으로 만남 당일 사신 일행의 행동거지를 직접 묘사한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서 판첸 접견 사실 자체를 다른 「판첸급여사신주접」은 박명원 일행이 판첸과 만날 때 수행한 구체적인 ‘의례’에 관계된 것이다. 「행재잡록」 수록 문서를 『동문휘고』의 「판첸급여사신주접」과 대조해 보면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완전 일치한다.⁷⁰⁾ 따라서 이 문서의 경우는 두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없다. 『동문휘고』 수록 원문에서 주요 부분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다) 臣等遵旨派員，會同理藩院司員等，帶領朝鮮國正使朴命源·副使鄭元始·書狀官趙鼎鎮等，前詣札什倫布，拜見班禪額爾德呢。行禮後，令坐吃茶。詢問該國遠近，並入貢緣由。該使臣答以因皇上七旬大慶，進表稱賀，並恭謝天恩。班禪額爾德呢聞之甚喜，即囑令永遠恭順，自然獲福。因給與銅佛藏香鼈鼈等物，該使臣等當卽叩謝(밑줄은 인용자; ‘拜見’의 ‘拜’는 원문에 ‘邦’이나 오자가 분명하므로 수정).⁷¹⁾

(다)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밑줄 친 “배견”(拜見)과 “고사”(叩謝)이다. 「행재잡록」에서 박지원은 이 문서를 옮겨 적은 다음, “예부의 주문(奏聞)을 보면, 그것이 ‘액이덕니(額爾德尼)[판첸: 인용자]를 배견(拜見)하였다’느니 ‘사신 등에게 물건을 주자, 해당 사신 등이 곧바로 고사(叩謝)하였다’느니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妄]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주어(奏語)의 사세(事勢)가 어쩔 수 없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예부의 “배견”·“고사” 운운을 그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양해

70) 이체자 사용으로 인한 글자의 차이가 보인다. 그 밖에 「행재잡록」의 “액이덕니(額爾德呢)”를 『동문휘고』에서는 “반선액이덕니(班禪額爾德呢)”[‘판첸 어르더니’: 판첸의 정식 봉호(封號)]로 적었다. 다만 「행재잡록」에서는 박명원 일행이 판첸을 만나러 간 날을 8월 12일[“本月十二日”]로 적었으나 이는 11일의 오기가 분명하다(후술). 『동문휘고』에는 이 날짜가 없다. 예부가 황제에게 상주한 날짜는 『동문휘고』와 「행재잡록」 모두 “8월 12일”로 일치한다.

71) 「原奏」, 『同文彙考』 原編 권15, p. 14b.

하였다.⁷²⁾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독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마련이다. 예부의 “배견”·“고사” 운운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판첸과의 만남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지원은 “사신이 판첸을 만난 일은 내가 「찰십륜포」 기(記)에 갖추어 실었다.”고 밝히고, “내가 목격한 바[吾所目擊者]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록하였으니,” “독자는 마땅히 그 (사실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⁷³⁾ 그렇다면 박지원이 자신이 “목격한 바”를 적은 「찰십륜포」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찰십륜포」를 보기에 앞서 「태학유관록」의 일기를 통해 판첸 접견 날짜를 재확인해 두자. 「태학유관록」에 따르면, 8월 11일 박지원은 숙소에 있다가 황제가 삼사를 인견한 후 판첸을 만나러 가라고 명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지원은 삼사 일행을 쫓아 찰십륜포[수미복수지묘(須彌福壽之廟)]로 달려갔다. 박명원이 문 밖에서 대기하라고 했던 하인들마저 경내에 들어오게 된 경위까지 묘사한 박지원은, 이때의 일을 따로 기록한 「찰십륜포」와 「반선시말」이 있음을 언급한 다음, 황제 알현에서 판첸 접견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박명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적고 있다. 8월 11일 일기의 말미에는 숙소에 돌아온 뒤 판첸과의 만남을 부리워하는 “중원의 사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당시의 이야기를 「황교문답」에 실었음을 밝히고 있다.⁷⁴⁾

이처럼 조선 사신 일행이 판첸을 만난 날짜는 8월 11일이었다.⁷⁵⁾ 또한

72) 『熱河日記』「行在雜錄」, p. 189.

73) 『熱河日記』「行在雜錄」, p. 189.

74) 『熱河日記』「太學留館錄」, pp. 136~139.

75) 위에서 인용한 (다)의 내용을 담은 『동문휘고』 기록에는 판첸을 만난 날짜가 생략되어 있다. 청과 조선의 기타 사료에서도 이 만남의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티베트 측 사료를 통해서 그것이 8월 11일의 일이었음을 확정할 수 있다(丹珠昂

박지원은 8월 11일의 일기에서 「찰십륜포」·「반선시말」·「황교문답」 등 3편으로 독자의 시선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찰십륜포」는 청·티베트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사료이기도 하다.⁷⁶⁾ 후술하듯이 건륭제와 판첸의 만남까지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박지원이 자신이 “목격한 바”를 적었다는 「찰십륜포」의 내용을 살펴보자.⁷⁷⁾ 「찰십륜포」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박명원 일행이 판첸과 만날 때의 ‘의례’에 관한 것이다[이하 ‘만남의 의례’]. 그 주요 내용은 이렇다. 박지원은 먼저 전내(殿內)에 판첸이 가부좌를 한 채 남향하고 있고 라마의 복장을 한 청의 “군기대신”⁷⁸⁾ 등이 판첸을 모시고 있었음을 묘사한다. 황제가 판첸을 만날 때 쓰라고 내무부(內務府) 관원을 통해 “합달”(哈達)[hada/khata: 티베트 불교에서 쓰는

奔 主編, 『歷輩達賴喇嘛與班禪額爾德尼年譜』,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8, p. 555). 嘉木央·久麥旺波, 許得存·卓永強譯,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0의 제14장 鐵鼠年 8월 11일 조에는 이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인다(텍스트 파일을 참조한 탓에 페이지는 적지 못함).

76) 예컨대 石濱由美子(1994), 앞의 논문; 村上信明(2006), 앞의 논문; 柳森(2012), 앞의 논문; 張亞輝(2013), 앞의 논문 등 해외의 많은 연구자가 『열하일기』의 「찰십륜포」를 인용하고 있다.

77) 『熱河日記』『札什倫布』, pp. 184-186. 이하 「찰십륜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는다.

78) 박지원은 “군기대신”이라고 썼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에 따르면 판첸이 박명원 일행을 만날 때 배석한 청의 대신은 “박대신(博大臣)과 류보주대신(留保柱大臣)”이었는데(『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제14장 鐵鼠年 8월 11일 조), 이 두 사람은 건륭 45년의 군기대신 아계(阿桂), 복릉안(福隆安), 양국치(梁國治), 화신(和珅), 동고(董誥), 복장안(福長安) 등 6명 가운데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錢實甫 編, 『清代職官年表』, p. 142). 류보주(留保柱)는 건륭 40년 10월부터 건륭 44년 정월까지의 주장대신(駐藏大臣)으로(『清代職官年表』, pp. 2303-2307), 티베트로부터 판чен을 수행해 온 인물이고, “박대신”은 당시 이번원상서(理藩院尚書)였던 박청액(博清額)을 가리킨다(『清代職官年表』, p. 240). 이 밖에도 『열하일기』에는 “군기대신”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례용 스카프]을 주었음을 언급하고, “군기대신”이 황제·황자·부마조차 모두 판첸에게 “고두”(叩頭)하니 조선 사신도 마땅히 “배고”(拜叩)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서술한다. 또 이미 아침에도 박명원 등이 황제마저 판чен을 “사례”(師禮)로 대우하니 “황조”(皇詔)를 받든 조선 사신 역시 그를 똑같이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부상서 덕보(德保)와 실랑이를 벌였음을 밝힌다. 이어서 박명원이 판чен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박명원은 앉아 있는 판чен과 “합달”을 교환할 때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昂首”(仰首)], 청의 “군기” 등이 눈치를 주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문제의 “배고”를 하지 않았다. 박명원과 대조적으로 청의 통관 등은 모두 “고두”하였다. 판чен과 사신 간에는 “중오역”(重五譯)의 통역을 통한 짧은 대화가 있었고,⁷⁹⁾ 판чен 측은 작은 불상[“小金像”] 등을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박지원은 판чен을 만나고 수미복수지묘를 빠져나온 일행이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면서 불상의 처치 문제를 두고 고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이하 ‘불상의 처치’]. 진하특사 일행에게 창졸간에 받은 불상은 “물리치자니 불공(不恭)하게 되고, 받자니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황제의 조지(詔旨)”에 관계된 것인 데다가 상황은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갔고, 사신은 그저 “토소목우”(土塑木偶)처럼 저들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물러나며 앉고 서고”[進退坐立] 했을 따름이다. 게다가 “중역”(重譯)으로 인해 의사 전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79) 여기서 “중오역(重五譯)”을 “다섯 차례의 통역 과정”(차혜원(2010): 344)으로 이해 해서는 안 된다. 판чен의 말이 박명원에게 전달되기까지 “다섯 차례의 통역 과정”이 있었다면 전체 여섯 가지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통역 과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언어는 최대 다섯 가지[티베트어, 몽골어, 만주어, 한어, 조선어]에 그친다. 따라서 “중오역”이란 단지 많은 단계의 통역을 거쳤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거나, 해당 원문[“喇嘛受語傳蒙古王, 蒙古王傳軍機, 軍機傳烏林哺以傳我譯, 蓋重五譯也”]에 등장하는 다섯 사람[喇嘛, 蒙古王, 軍機, 烏林哺, 我譯]이 판чен과 박명원 사이에 끼어 있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런 까닭에 불상을 엉겁결에 받고 말았다. 박명원은 숙소인 태학에 불상을 들일 수는 없다면서 역관에게 불상 둘 곳을 찾아보게 하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박지원은 사신 일행을 구경하던 무리 속에서 군기장경 소림[8월 9일 황제의 유지를 전한 사람: <표 3> 참조]과 환관 2명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의논을 엿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결국 사신 일행은 불상 둘 곳을 찾지도 못하여 숙소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다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부분이 이어진다[이하 ‘건릉과 판첸의 만남’]. “황제가 원중(苑中)에서 매화포(梅花炮)를 놓고는 사신을 불러 (궁에) 들어와서 보게 하였다.”고 말한 다음, 박지원은 전각의 가운데 뜰에 “황악”(黃幄)이 세워져 있었다고 적는다. 수많은 관원이 각자의 자리에 서 있고, 판첸이 먼저 와서 탑상(榻上)에 기다리고 있었다. “일품보국공”(一品輔國公) 등이 탑하(榻下)로 가서 판첸에게 모자를 벗고 “고두”하였다. 황제가 등장하자 판첸은 천천히 일어나 웃으면서 황제를 맞았다. 황제는 두 손으로 판첸의 손을 쥐고는 서로 흔들면서 웃으며 이야기했다. 둘은 같은 탑상에 보료만 따로하여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다. 청의 조정을 뒤흔들던 권신 화신(和珅)과 복장안(福長安)이 각각 건릉제와 판첸의 차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마주잡고 있다가 헤어졌다.

이상이 박지원 자신이 “목격한 바”를 근거로 썼다는 「찰십륜포」의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 ‘만남의 의례’에서 박지원은 8월 11일 박명원이 판첸에게 “배고”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다)에서 예부가 “배견”·“고사” 운운한 것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게다가 박명원의 “배고” 거부는 예부상서나 “군기대신” 등의 강요를 이겨낸 ‘쾌거’였다.

두 번째 ‘불상의 처치’는 문제의 불상을 두고 사신 일행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간의 의미는, 만약 사신 일행에게 만남의 과

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또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또는 언어 장벽이 낮기라도 했다면 불상의 수령도 거부하였으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불상을 태학에 들이는 것이 불가한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나름 방도를 모색했으나, 감시의 눈길이 있어 그마저 예의치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황제의 조지(詔旨)”에 의한 것이었다.

‘불상의 처치’는 11월 12일 박명원의 상소 내용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박지원의 해명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피서록」에서 박지원은 불상 둘 곳을 찾지 못한 뒤의 이야기를 잊고 있다. 오늘 판첸에게서 받은 불상은 거의 1척 크기로 목재를 깎아 도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창졸간에 이를 받고는 일행 상하가 어쩔 줄 몰라 했다. 저녁에 박명원에게 대책을 물으니 수역(首譯)을 시켜 작은 궤짝을 마련하라 시켰다고 한다. 박지원이 좋은 생각이라 하자, 박명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지원이 강물에 띄우려는 것 아니냐고 대꾸하자, 박명원이 웃었고 박지원 역시 웃었다. 박지원은 “연도(沿道)의 사찰에 버려 두자니 중국이 분노할까 두렵고, 이걸 들고 입국하자니 물의를 일으킬 것이 뻔하니, 피차의 교계에서 물에 띄워 흘러보내 바다로 보내기는 압록강만한 데가 없다.”고 적었다.⁸⁰⁾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박명원이 정조의 명령에 따라 불상을 묘향산으로 보낸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문제의 불상에 관한 뒷이야기는 「행재잡록」에도 등장한다. (다)의 “배견”·“고사”가 “거짓말”이었음을 언급한 다음, 박지원은 삼사가 받은 불 건의 목록을 적었다. 이어서 불상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다. 동불은 호신 불의 의미로 멀리서 온 자에게 선물하는 것이 중국의 예이며, 티베트에서도 연례 진공(進貢) 때 불상을 가장 중요한 방물로 바친다는 것이다. 이 동불은 판첸이 조선 사신을 위해 “기축”(祈祝)하는 의미로 준 상급의 예물[“上幣”]이지만, 조선에서는 “한 가지 일이라도 불교와 관계되면 반

80) 『熱河日記』『避暑錄』, p. 276.

드시 평생의 누(累)가 되는데, 하물며 이것을 준 자가 번승(番僧)임에랴?”라고 하면서, 사신이 북경으로 돌아온 뒤 판첸이 준 (불상을 제외한 나머지) “폐물”(幣物)을 죄다 역관들에게 주었음을 밝혔다.⁸¹⁾ 역관들도 이를 분뇨처럼 더럽게 여겼고, 은 90냥을 받고 팔아 일행의 마두배(馬頭輩)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그들도 더럽다 여겨 그 은으로는 술 한 잔도 사서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깨끗하다면 깨끗할 것이나, 남의 풍속으로 보자면 촌놈의 어리석음(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여 불상을 준 자의 뜻을 헤아리려 들지 않는 태도에 일침을 가하긴 하였지만, 이를 통해서 박지원은 사신 일행이 위아래 가릴 것 없이 판첸의 선물을 관한 한 모두가 한결같은 심정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⁸²⁾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불상을 선물한 판첸의 의도에 대한 박지원의 ‘해석’이다. 박명원은 이 불상이 실은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황제가 준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윤장렬은 판첸의 불상 선물을 “불가의 계법”으로 보았고, 이는 불상이 황제와 무관하다는 의미였다. 아마도 「행재잡록」을 쓸 무렵 박지원 역시 황제가 불상과는 무관했음을 깨달은 것 같다. 이제 박지원은 판첸의 불상을 멀리서 온 조선 사신을 “기축”하는 상급의 예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박지원은 불상에 관한 해명에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라는 측면에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대목은 「찰십륜포」의 ‘건륭과 판첸의 만남’이 아닐까 싶다. 박지원은 매화포, 즉 불꽃놀이를 할 때 황제가 판첸을 만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여기서 황제와 판첸은 의례상 대등한 존재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열하 일기』가 청·티베트 관계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종종 인용되는 것도 순전히 이 장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륭과 판첸 간 만남

81) 姜東局은 이때 판첸이 준 불상까지 처분한 것으로 오해하였다(姜東局(2012), 앞의 논문, 255쪽, 261쪽).

82) 『熱河日記』『行在雜錄』, pp. 189-190.

의 의례와 관련하여 한문 사료와 장문(藏文) 사료 간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열하일기』의 묘사는 제삼자의 객관적 관찰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그가 예상한 효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박지원이 「찰십륜포」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을 배치한 이유는 ‘만남의 의례’ 부분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청의 관원들은 박명원에게 판첸에 대한 “배고”(拜叩)와 “사례”(師禮)를 강요하였다. 박지원은 심지어 황제도 판첸에게 “고두”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독자라면 ‘황제가 설마?’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박지원은 자신이 “목도한 바”에 근거하여 황제와 판첸의 항례(抗禮)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이런 독자를 향해 회심의 결정타를 날렸던 셈이다. 게다가 박지원은 권세에서 화신과 쌍벽을 이루는 복장안이 판첸의 차 시중을 든 사실도 밝혔다. 혹시나 시선의 분산으로 효과가 반감될까 우려했던지, 박지원은 불꽃놀이 자체는 이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고, 따로 「매화포기」(梅花炮記)를 써서 「산장잡록」(山莊雜記) 속에 배치하기까지 하였다.⁸³⁾ 이 정도면 박지원을 포함한 박명원 일행에게 어느 누구도 막무가내로 ‘봉불지사’ 혐의를 씌우기 힘들어 보인다. 판첸은 곧 황제와 동격인 존재였기 때문이다.⁸⁴⁾

하지만 박지원의 강조한 대로 그것이 “8월 11일”에 자신이 “목도한 바”에 근거한 것인지는 한 번 따져볼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찰십륜포」의 ‘건륭과 판첸의 만남’은 사실 “8월 11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가 직접 “목도한 바”가 아니라 (아마도 삼사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근거한 묘사였다. 박지원은 8월 11일 자신이 “목도한 바”를 기록한 ‘만남의 의례’와 ‘불상의 처치’ 다음에, 8월 14일에 있었던 ‘건륭과 판첸

83) 『熱河日記』『山莊雜記』, pp. 247-248.

84) 불꽃놀이를 하던 날 건륭과 판첸이 만났고 두 사람이 항례하였다는 「찰십륜포」의 묘사는 티베트 측 사료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 날짜는 8월 14일이었다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제14장 鐵鼠年 8월 14일 조).

의 만남’에 대해 “전해 들은 바”를 접속시킴으로써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이다.

『태학유관록』의 8월 11일 일기와 『찰십륜포』의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찰십륜포』의 세 부분은 모두 같은 날, 즉 8월 11일에 있었던 일을 묘사한 것처럼 읽힌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본의 한 논문은 『열하일기』를 언급하면서, “조선 사절은 수미복수묘를 나온 뒤, 피서산장 안에서의 연석(宴席)에 초대되어, 거기서 건륭제와 판첸 라마 3세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⁸⁵⁾ 그런데 이 글의 <표 3>에서 보았듯이, 조선 사신의 열하 체류 기간에 불꽃놀이가 열린 날은 8월 11일이 아니라 14일이었다.⁸⁶⁾

청의 기거주에 따르면, 8월 11일 건륭제는 토르구트의 칸을 비롯한 일행 7인과 조선의 삼사를 피서산장 궁문에서 인견한 외에 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⁸⁷⁾ 판첸 역시 하루 종일 수미복수지묘에 머무르면서 조선 사신 등을 접견하였다.⁸⁸⁾ 8월 11일에는 불꽃놀이도 없었고 ‘건륭과 판첸의 만남’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열하일기』를 제외한 모든 사료는 불꽃놀이를 8월 14일의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청의 기거주는 8월 14일 오후 만수원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고, 당시 참석자 명단에 박명원 등 3인을 포함시키고 있다.⁸⁹⁾ 티베트 측 사료에서도 불꽃놀이 날

85) 村上信明(2006), 앞의 논문, p. 131.

86) 金東錫은 『열하일기』의 기록에 따라 불꽃놀이의 날짜를 8월 11일로 확정하고,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9.17 장계」가 불꽃놀이를 14일의 일로 보고한 것을 두고, “당시의 기록물이 제도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개인 저작물인 『열하일기』는 비교적 이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金東錫(2005), 앞의 논문, 204쪽). 그러나 불꽃놀이는 8월 14일의 일이었다.

87) 『乾隆四十五年巡幸熱河起居注』, 『清宮熱河檔案』 4, p. 490.

88)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제14장 鐵鼠年 8월 11일 조.

89) 『乾隆四十五年巡幸熱河起居注』, 『清宮熱河檔案』 4, p. 491.

짜는 8월 14일이다.⁹⁰⁾ <표 3>에서 보았듯이 박명원의 「9.17 장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찰십륜포」는 독자에게 일종의 ‘시간 착오’를 일으키게끔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찰십륜포」에서 박지원이 8월 11일 오전에 벌어진 일에 8월 14일 오후의 일을 곧바로 접속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즉, ‘불상의 처치’에서 ‘건륭과 판첸의 만남’으로 넘어올 때 날짜 기입을 ‘실수’로 잊은 것은 아닐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학유관록」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8월 11일의 일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8월 12일 이후를 보자. 8월 12일 삼사는 새벽 무렵에 입궐했고, 박지원은 아침을 먹은 뒤 궁궐에 갔다. 박지원은 안쪽에 설치된 희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담장 밖에서 구경했다. 8월 13일 삼사는 만수절 조하(朝賀)에 참석하고자 새벽에 입궐했고, 박지원은 뒤늦게 일어나 궁궐 가까이에 가서 화신이 진상했다는 물건을 보았다. 저녁에 여지름을 맛보았고, 밤에는 기풍액(奇豐額)과 이야기를 나누었다.⁹¹⁾

이처럼 12일 · 13일 양일에 박지원은 삼사와 동행한 흔적이 없다. 박명원의 「9.17 장계」를 보면, 8월 12일에는 황제가 희대의 공연 관람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새벽에 입궐하여 묘시부터 미정까지 공연을 보았고, 황제가 내린 선물을 받았다고 하였다. 8월 13일에는 만수절 하례에 참석하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정까지 공연을 관람한 뒤 황제의 특별 선물을 받아 왔다. 양일 모두 삼사는 새벽에 입궐하여 오후 2시경까지 공연을 관람했던 것인데, 박지원은 신분이 “종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90)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제14장 鐵鼠年 8월 14일 조. 판첸의 불꽃놀이 참석 사실은 청 측의 또 다른 사료[方略館 起居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乾隆帝于萬壽園賜班禪蒙古王公等人觀火戲』(건륭 45년 8월 14일), 『六世班禪朝覲檔案選編』,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6, p. 264).

91) 『熱河日記』『太學留館錄』, pp. 139-142.

여기에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⁹²⁾

문제의 8월 14일 박명원과 박지원 두 사람의 행적을 짚어 보자. 먼저 「9.17 장계」에 따르면, 박명원은 미정까지 사흘째 공연을 관람한 다음, 후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황제가 “장전”(帳殿)에 도착한 뒤 “화포 및 잡회”를 구경하였는데, 이는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끝났다. 이어서 예부로부터 이튿날 북경으로 떠나라는 “황지”를 전달받았다. 12일·13일에는 낮에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14일에는 불꽃놀이에 참석하느라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궐내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면 박지원은 14일의 행적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삼사는 새벽에 입궐했고, 자신은 실컷 잠을 자고 일어나 태학의 숙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연 “오후에 세사신이 대성전(大成殿)에 들어가 배일”한 뒤 추사시(鄒舍是)와 왕민호(王民皞)에게 불품 없는 선물을 준 일을 전한다. 황혼 무렵 북경으로 돌아가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행은 밤중까지 짐을 꾸렸다.⁹³⁾

「태학유관록」의 8월 14일 일기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박지원은 이날 숙소를 떠난 적이 없다. 12일·13일과 마찬가지로 “종인” 신분의 박지원은 입궐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이날 오후 세사신의 ‘대성전 배일’은 「9.17 장계」의 내용과 모순된다. 장계에 따르면 삼사는 종일 궐내에 머물렀으므로, 삼사의 ‘대성전 배일’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허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박지원이 삼사의 ‘대성전 배일’을 언급한 것은 ‘봉불지사’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하다. 공자를 모신 태학에 체류했으면서도 대성전을 참배하지 않았다

92) 「9.17 장계」에서 박명원은 삼사 외에 “통사(通事) 3인, 종관(從官) 4인, 종인(從人) 64명”이 열하로 갔다고 보고하였고, 이 가운데 통사와 종관의 명단은 『열하일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熱河日記』『行在雜錄』, p. 188). 박지원의 이름은 이 명단에 없으므로 그가 “종인” 신분으로 열하에 갔음을 알 수 있다.

93) 『熱河日記』『太學留館錄』, pp. 142-147.

고 한다면 박명원의 ‘봉불지사’ 혐의는 더욱 짙어졌을 것이다.

셋째, 14일 사신의 동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라 할 “화포 및 잡회” 구경 사실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⁹⁴⁾ 이는 「찰십륜포」에서 ‘건륭과 판첸의 만남’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한다. 만약 박지원이 14일의 일기에서 박명원이 불꽃놀이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면, 『열하일기』의 독자는 「찰십륜포」의 ‘건륭과 판첸의 만남’이 8월 14일의 일이었음을 쉽게 파악했을 것이다. 또한 앞의 두 부분과 달리 ‘건륭과 판첸의 만남’은 박지원이 “목도한 바”가 아니라 “전해 들은 바”에 근거했음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 14일의 일기는 사신 일행의 불꽃놀이 구경 사실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불꽃놀이 광경을 묘사한 「매화포기」에서도 박지원은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다.⁹⁵⁾ 이 때문에 『열하일기』만 읽은 독자라면 「찰십륜포」의 ‘건륭과 판첸의 만남’을 8월 11일의 일로 읽게 된다. 또한 박지원은 「찰십륜포」에서 “황제가 원중에서 매화포를 놓고는 사신을 불러 (궁에) 들어와서 보게 하였다.”라고만 썼다. 비록 자신이 사신과 동행했다고 명기한 것은 아니지만, 8월 11일 오전 판첸 접견 이후 그가 사신과 행동을 함께했음을 읽은 독자는 박지원 역시 불꽃놀이 현장에 동석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이다. 만약 불꽃놀이가 14일의 일임을 밝혔다면 이런 ‘오해’는 일어날 수 없다. 14일에 박지원은 줄곧 태학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신 일행의 불꽃놀이 구경 사실에 대한 14일 일기의 ‘침묵’, 그리고 「매화포기」의 불꽃놀이 날짜에 대한 ‘침묵’ 등은 「찰십륜포」의

94) 11월 5일 서장관 조정진이 제출한 문건사건을 보면, 총 14개 항목 가운데 열 번째 항목에서 8월 14일 만수원에서 있었던 불꽃놀이와 씨름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5일 조). 또한 10월 17일 국왕을 알현한 윤갑종도 불꽃놀이의 장관(“一大觀”)을 보고하였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17일 조).

95) 『熱河日記』 『山莊雜記』, pp. 247-248.

불꽃놀이 날짜 누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찰십륜포」의 독자로 하여금 ‘건륭과 판첸의 만남’을 8월 11일 박지원 자신이 “목도한 바”로 읽게 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구성적 ‘장치’로 보지 않을 수 없다.⁹⁶⁾ 박지원은 불꽃놀이의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태학유관록」의 8월 11일 일기와 연결된 「찰십륜포」에서 ‘건륭과 판첸의 만남’을 묘사하였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 묘사를 박지원의 목격담(eye-witness account)으로 읽게 된다. 만약 삼사의 불꽃놀이 참석이 14일이었음을 밝혔다면, 「찰십륜포」의 ‘건륭과 판첸의 만남’은 전문담(hearsay account)이 되어 버린다.

결국 박지원은 치밀한 구성을 통해 「찰십륜포」를 읽는 독자의 ‘시간 착오’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첫째, 독자로 하여금 「찰십륜포」 전체를 같은 날의 일로 읽게 하는 것이다. 둘째, 「찰십륜포」 전체를 ‘목격담’으로 읽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공히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 결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내용적 측면에서 『열하일기』가 여타의 ‘연행록’을 뛰어넘는 관심의 대상이 된 데에는 진하특사 일행의 ‘열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의 고찰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 관련 텍스트는 박지원의 ‘봉불지사’ 변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봉불지사’ 변호라는 컨텍스트가 ‘열하 경험’에 관한 묘

96) 만약 삼사의 ‘대성전 배알’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8월 12일 또는 13일 오후의 일이었을 수 있다. 이 경우 박지원은 ‘대성전 배알’을 14일 오후의 일로 바꾸어 적은 셈이 되는데, 이것 역시 ‘건륭과 판첸의 만남’이 있었던 불꽃놀이의 날짜를 11일로 읽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